

싱가포르 商標制度解說



朴 晚 緒
<辨理士>

① 登錄될수 있는 商標

싱가포르에 있어서 다음에掲記한 重要事項이 적어도 1내지는 그 하나로서 成立해야만 한다.

- (1) 會社, 個人 또는 組合의 名稱으로서 特別한 方法으로 表示한 것.
- (2) 登錄出願人 또는 그 前營業主의 署名
- (3) 考案한 말
- (4) 其他 特別顯著한 標章

② 商標登錄出願

누구던지 現在 使用하거나 또는 사용하려 하는 상표의 所有者임을 主張하여 그 상표를 商標原簿에 등록할 것을 希望하는 경우에는 所定의 方式에 의한 書面으로 登錄官에 그 등록출원을 할 수가 있다.

그러나 商標法 (또는 商標條例)의 規定을 留保하여 등록관은 그 출원을 拒絕하거나 출원을 無條件 또는 조건을 붙여서 變更修正케 하거나相當한 制限을 加하여 認容할 수가 있다.

그리고 前項과 같이 거절 또는 조건을 붙여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원인의 請求로서 그決定의理由 및 使用한 資料를 開示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法院에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다.

법원은 불복신청을 受理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원인 및 등록관을 審問하고 出願書受理의 可否, 受理時의 條件, 變更, 修正 또는 制限範圍 등을 定한다.

한편 商品에 關聯되는 商標登錄出願인이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, 출원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서 거절하거나 등록의 許可를 留保할 수는 없다.

(1) 출원인이 設立中の 會社로서 상표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目的을 가지고 그 상표를 그 會社에 讓渡할 意圖가 있는데 대해서 등록관이 滿足했을 때.

(2) 상표등록출원에 商標使用登錄申請이添付되어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者로 하여금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의도를 갖고서 그 商標登錄後 遲滯없이 使用權者로서 등록할 것에 대해 등록관이 만족할 때 등이다.

그러나 회사에 상표를 양도할 의도를 갖고 있는 출원인의 名義로서前述한 權限行使에 의해 상품에 관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6個月以內에 그 회사가 상품에 관계되는 商標權者로서 등록하지 않았으면 그 상표등록은 그期間의 滿了로서 効力を喪失한다.

한편 公衆을 欺瞞하여 混同을 이르키는 등의 이유로서 법원의 保護를 받을 수 없는 事項, 또는 公序良俗에 違反하거나 醜惡한 圖案으로 된 것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가 없다.

③ 公告 및 異議

特許廳은 상표등록출원을 무조건 또는 조건이나 制限을 붙여서 인용한 경우에는 遲滯없이 所定의 方式에 의해 그 출원을 公告하며 여기서는 모든 조건이나 제한내용을 揭載하게 된다.

한편 누구라도 商標登錄出願公告日로부터 30日 以內에 등록관에게 登錄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.

이의신청에는 그 이유를 開示하여 書面으로 提出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관은 이의신청부

본을 출원인에게 送達한다.

출원인이 그 부분을 수리한 후 소정의 기간이내에 출원이 正當하다는 것을 詢하는 答辯書를 등록관에 送付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懈怠하면 그 출원은 拋棄한 것으로 看做된다.

등록관이 답변서를 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다시 異議申請人에게 送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當事者雙方을 심문하거나 證據를 取合하여 등록의 許與與否 및 등록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의 可否를 결정한다.

그리고 등록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법원결정에 불복할 때 抗訴法院에 提訴할 수가 있다.

④ 登錄使用權者

商標權者以外의 者는 商標登錄(防護商標以外의 등록)에 관계되는 상품에 登錄使用權者로서 등록할 수가 있으며 등록 사용권자가 去來上 관계가 있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.

그리고 누구던지 상표의 등록사용권자로서 등록받을 경우, 그 자와 상표권자는 소정의 방식에 의해 書面으로 등록관에게 신청을 하되 法定宣言書 및 關係書類나 증거를添付해야 한다.

선언서에 記載할 事項으로서

(1) 雙方間에서 發生된 關係中 使用許諾의 統制程度 및 專用 또는 通常使用權의 區分

(2) 등록에 관계되는 상품

(3) 상품의 特徵에 관해붙여진 조건이나 제한

(4) 登錄使用權期限의 有無와 기한이 있을 경우는 그 存續期間등이다.

이와 같은 要件들이 充足되면 書類등의 審查를 하고 그 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公益에 違反하지 않는限 登錄使用權者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.

⑤ 登錄存續期間

상표등록은 그 효력이 7년이며 更新할 수가 있다.

등록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갱신등록의 有効

期間은 最初의 등록 또는 갱신된 등록의 存續期間滿了日로부터 14년간이다.

更新手數料의 未納理由로서 상표등록이 원부에서 말소되었으면 그 상표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出願目的을 위해 원부에 등록된 상표로 간주한다.

⑥ 商標의 不使用

상표등록은 다음 이유로서 利害關係人의 신청으로 指定商品에 關하여 원부에서 말소된다.

(1)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를 그 상품에 사용할 善意의 意圖가 없고 그 회사 또는 등록사용권자가 역시상표사용에 선의적의도가 없었을 때

(2) 利害關係人이 申請日 1個月以前까지 繼續하여 5년 이상 그 권리자로서 그 상품에 關하여 등록상표를 선의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.

⑦ 商標의 讓渡 및 移轉

등록상표는 營業과 더불어 또는 영업과 分離하여 양도나 移轉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그 1部에 대해서 양도나 이전을 할 수가 있다.

상표등록에 관계되는 상품에 關하여 그 등록상표를 양도하려는 상표권자는 그 상품 또는 그 상표의 類似性에 비추어 상표의 양도가 有効한지의 여부를 判定하는 證明書의 交付를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가 있다.

⑧ 優先權主張

英國 또는 商標相互保護協定締結을 希望하는 國家에 상표를 등록했거나 그 등록출원을 했을 경우 그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, 讓受人은 他人에 優先하여 상가포르에서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登錄日字는 英國 또는 外國에 출원한 日字와 同一하게 본다.

다만 그 상표등록출원은 영국이나 외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등록된 날 이전에 발생한 權利侵害의 損害賠償請求權利는 상표권자에 賦與하지는 않는다.